

안전강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

# 수상레저 법령체계 개편

##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 및 부과기준액

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는 '23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.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| 내 용   | 부과기준액* |
|---|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</li> <li>* 기구 및 부속품에 대한 정기점검, 기상정보·조류·수상상태·안전수칙 고지, 이용객 교육시 휴대용 구명장비(구명튜브, 레스큐 튜브 등) 비치</li> </ul> | 100만원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동력수상레저기구 용도변경(개인용 ↔ 사업용)시 변경등록 의무화</li> </ul>  | 1~30만원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등록번호판 미부착 상태에서 운항 금지</li> </ul>  | 50만원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시 무선설비 작동 의무화</li> <li>* 한정연해·연해·근해·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</li> </ul>   |  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시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화</li> <li>* 연해·근해·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</li> </ul>  |  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안전검사필증(검사유효기간 및 검사받은 년도 기재) 부착 의무화</li> </ul>  | 20만원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증 반납 의무화</li> </ul>  | 30만원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의 운항조건 준수 의무화</li> <li>* 시험운항의 목적 및 운항구역 준수, 안전장비 비치</li> </ul>  |        |

\*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등 일정 요건에 따라 가중·감경 가능



## 수상레저법령 주요 제·개정 사항

기존 「수상레저안전법」상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·제정한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과 「수상레저안전법」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. 주요 제·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| 구분            | 내 용   |
|---------------|---|
| 수상레저<br>안전법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1급 조종면허 취득연령 상향(14세 이상→18세 이상)</li> </ul>   |
|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조종면허시험 불합격 시 재시험 기간 규정<br/>* (필기)불합격한 날의 다음날부터, (실기)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</li> </ul>  |
|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수상안전교육 면제 요건 강화<br/>* 응시원서 접수일, 조종면허증 갱신 시작일, 갱신기간 마지막날부터 6개월 내 수상안전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교육 이수자만 면제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대여·알선행위 금지(형사처벌)<br/>*(법정형)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</li> </ul>   |
|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조종면허 필기시험 응시자가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응시 가능</li> </ul>  |
|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태풍·풍랑·폭풍해일 등 경보 이상 기상특보 시 수상레저활동 금지</li> </ul>   |
|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야간 수상레저활동시 갖추어야 하는 야간 운항장비(10종) 세부기준 마련<br/>* (예시) <b>전등</b> 서치라이트·방수형 랜턴, <b>다침반</b> 조타기컴퍼스·휴대용자기컴퍼스</li> </ul>       |
| 수상레저<br>기구등록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번호판 재발급 시, 이전 번호와 동일하게 발급<br/>* 처리기간(즉시→14일),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확인서 신설</li> </ul>  |
|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무료<br/>*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</li> </ul>  |
|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실시하는 검사대상 변경<br/>* 총톤수 5톤 ↑, 운항구역 연해구역 ↑, 승선정원 13인 ↑</li> </ul>  |
| 공통사항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벌칙 부과 시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벌규정 부과<br/>*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해양경찰청  
KOREA COAST GUARD

